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입법예고안

1. 의결주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 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한시적인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2020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나. 올해 종료 예정인 운수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적인 과적 및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과거 1년간 범규 위반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연 2회 위반은 3개월 제한, 연 3회 이상 위반은 6개월 제한)

다. 상습적인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과적 및 적재불량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운전자 성명, 차량의 차량등록번호 등 감면제외 대상 판별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00.00. ~ 2020.00.00.)

2) 행정규제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제1항제7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다음 호의 단서를 다음 같이 신설 한다.

다만, 해당 차량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이하 “과태료 등” 이라 한다)을 처분받고, 해당 과태료 등이 처분된 날(이하 “처분일” 이라 한다)로부터 과거 1년 동안 동일한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동일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처분된 경우, 해당 운전자가 운행하는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처분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동일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과태료 등이 처분된 경우에는 6개월 간, 이하 “감면 배제기간” 이라 한다) 통행료의 감면을 배제 할 수 있다.(감면 배제기간 중 새롭게 산정된 감면 배제기간은 기존 감면 배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해당 운전자는 감면배제 된 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행료가 부과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미만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제15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통행료 감면 배제 대상이 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과태료 부과 처분서 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을 받은 일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7호·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는 제8조제1항제7호·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 ----- -----.
1. ~ 6. (생)	1. ~ 6. (현행과 같음)
7. <u>2020년 12월 31일까지</u>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7. <u>2022년 12월 31일까지</u> ----- ----- -----
<u><단서 신설></u>	----- 다만, 해당 차량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이하 “과태료 등”이라 한다)을 처분받고 해당 과태료 등이 처분된 날(이하 “처분일”이라 한다)로부터
가. (생 략)	<u>과거 1년 동안 동일한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동일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처분된 경우, 해당 운전자가 운행하는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처분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동일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과태료 등이 처분된 경우에는 6개월간, 이하 “감면 배제기간” 이</u>
나. (생 략)	

8.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
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
으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
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해
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단서 신설〉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라 한다) 통행료의 감면을 배제할 수 있다(감면 배제기간 중 새롭게 산정된 감면 배제기간은 기존 감면 배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해당 운전자¹는 감면배제된 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행료가 부과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미만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8.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다만,
제7호 단서를 준용한다.

9.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① 법 제21조의 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생략)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 바. (생략) <u><신설></u> 3. (생략)	<u>다)로서</u>----- ----- <u>수소전기자동차</u>----- -----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①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통행료 감면 배제 대상이 된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과태료 부과 처분서 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을 받은 일자.</u>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87